



제422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7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3.
3. 회부연월일: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규칙 등으로 규정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6조의2(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u> <u>1.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u> <u>2.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u> <u>③ 사립학교 교원이 제1항 각</u>

	<u>호에 해당하고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질병휴직 필요성, 복직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의 또는 의견제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각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와 질병휴직위원회(「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를 운영하고 있음.

[표 1]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병휴직위원회 현황

구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
근거	· 각 교육청별 규칙	·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질병휴직)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교육부 예규)
운영	· 서울 등 13개 교육청 *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교육청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	· 전체 17개 교육청
대상	· 전체 교원 중 해당 교원	· 교육공무원 중 해당 교육공무원
심의 사항	·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래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58조제1항제1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아래 조항의 조치(휴직, 직권 면직) 필요성 · 아래 조항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70조의3(난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주: 1. 부산, 세종, 경기, 충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2. 서울은 심의사항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에 대한 것으로 규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각 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 및 제2조,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1조 및 제2조 내용 정리

최근 4년간(2022~2025년) 기준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에서는 2022년 4건, 2023년 20건, 2024년 41건, 2025년 2월 기준 5건이 심의되었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교육청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2]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병휴직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2.	합계
서울	-	2	5	-	7
부산	-	1	-	-	1
대구	-	-	-	-	0
인천	2	2	9	1	14
광주	-	-	-	-	0
대전	-	-	-	-	0
울산	-	1	2	-	3
세종	-	-	-	-	0
경기	-	2	3	-	5
강원	-	-	-	-	0
충북	-	1	6	2	9
충남	-	3	3	-	6
전북	2	3	3	1	9
전남	-	-	1	-	1
경북	-	2	8	-	10
경남	-	-	1	1	2
제주	-	3	-	-	3
합계	4	20	41	5	70

자료: 교육부

위원회 심의건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거나,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

에 대하여 면직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해당 사안의 심의나 의견청취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질환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질환교원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규정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를 이행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질환교원에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근거, ② 적용대상, ③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먼저, 개정안은 제56조의2제1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3에 따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적합성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

사립 초·중등학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각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¹⁾는 점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²⁾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② 다음으로, 개정안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제58조제1항제1호(휴직 관련 직권 면직), 제59조제1항제1호(질병휴직)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규정함.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적용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은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이므로, 사립학교 교원 중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는 개정안과 같이 「사립학교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또한, 개정안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질환이 있는 사립학교 교원이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교육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1)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138호, 2025.2.13.)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교원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각 학교별 임용권자에게 있고, 교원에 대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 권한은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³⁾ 심의결과에 따라 휴직, 면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한 각 시·도교육청별 규칙에서는,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되, 조치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임용권자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각 호의 내용 생략)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각 호의 내용 생략)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각 호의 내용 생략)

4) 「인천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 타 교육청 규칙의 내용도 유사하여 예시로 제시함

제4조(설치)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심의절차 등)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2조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관계 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전제하고 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
 되어 계류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병합 심사를 통해 논의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091호)	고동진 의원	2025.2.12./ 2025.2.13.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2	교육공무원법 (제2208113호)	박덕흠 의원	2025.2.12./ 2025.2.13.	·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 (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3조의3 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138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3 신설)
4	교육공무원법 (제2208153호)	김기현 의원	2025.2.14./ 2025.2.17.	·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45조의2 신설)
5	교육공무원법 (제2208160호)	고민정 의원	2025.2.14./ 2025.2.17.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휴직교원 복직시 심의 의무화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6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 (안 제44조의2) ·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7	교육공무원법 (제2208232호)	윤준병 의원	2025.2.18./ 2025.2.19.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 (안 제44조의3 신설 등)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 의 처

02)6788-5189